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102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유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문

변 론 종 결 2021. 3. 24.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2015. 12. 17.과 2018. 10. 5.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2018. 10. 10. 매매예약 및 2019. 7. 15. 매매계약은
131,427,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42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8. 10. 1.경 소외 C와 유류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19. 2. 19.까지 2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졌다가 그중 3,700만 원을 변제받고 현재 나머지 1억 6,3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C의 채권자로서, 2018. 10. 1.경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2019. 2. 19.까지 성립된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로 이루어진 2015. 12. 17.과 2018. 10. 5.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2018. 10. 10. 매매예약, 2019. 7. 15.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반환을 구한다.

2. 2015. 1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므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조차 2018년 이후 성립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채권이 2015. 12.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은 주장 자체로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머지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계약 중 2019. 7. 15. 매매계약의 경우 2018. 10. 10. 매매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결국 C와 피고 사이의 2018. 10. 5.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8. 10. 10. 매매예약 체결 당시(이하 이를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 무렵’으로 통칭한다)를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이 위 각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우선적인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3, 5,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주유소 거래

가) 원고는 C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는 D주유소에 2018. 10. 1. 72,098,615원의 유류공급을 시작으로 2020. 1. 15.까지 총 1,863,323,740원의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C로부터 총 1,826,822,540원을 지급받았다.

나) 위 거래에서 2018. 10. 10. 당시 미지급 대금 잔액은 40,254,775원이었고, 2018. 10. 10. 이전의 유류공급 총액은 103,254,775원이었는데, C는 2018. 10. 11.까지 이를 넘어서 103,791,265의 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함으로써, 2018. 10. 11.에는 그때까지의 총 공급액을 넘어서는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

다) 위 거래의 2019. 2. 19. 당시 미지급 대금 잔액은 59,462,000원이었다.

2) E 거래

가) 원고는 C가 운영하는 E에도 2018. 10. 6. 16,632,187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19. 4. 5.까지 총 494,508,779원의 유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으로 C로부터 435,453,502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8. 10. 10.까지 45,696,565원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아, 당시 미지급 대금 잔액은 45,696,565원이었는데, C는 2018. 10. 19.까지 88,000,000원의 대금을 원고에게 입금하였고(그 사이 추가 공급액이 있으므로 총 공급액을 넘어서는 대금을 지급한 상태는 아니었다), 2019. 1. 4.에는 그 때까지의 총 공급액을 넘어서는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다) 위 거래의 2019. 2. 19. 당시 미지급 대금 잔액은 95,456,545원이었다.

3) F주유소 거래

가) 원고는 C가 운영하는 F주유소에도 2019. 1. 3.부터 2020. 6. 19.까지 3,374,490,504원의

유류를 공급하고 3,309,550,868원의 대금을 C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2019. 2. 19. 당시 미지급 대금 잔액은 51,786,000원이었는데, C가 2019. 2. 22.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하여 곧바로 총 공급액을 넘어서는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

다.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그러나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에서는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체적인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까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고 있다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그 자체에 기하여 거래당사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하지는 아니하며, 주문자가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물품의 공급을 의뢰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는 별개의 법률관계가 성립하여야만 채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C와 계속적인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사실 외에, 그 계속적 물품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량, 거래단가, 거래시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미리 정하거나, 일정한 한도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사전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2019. 2. 19.까지의 물품대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 무렵 발생하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위의 3가지 요건(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 채권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 실제 채권의 성립)을 충족하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는 본질적인 이유가, 그러한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C가 거래를 막 시작한 단계에 있었고, 물품대금이 전액 변제되기도 했던 상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처분행위 무렵 C에게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4) 한편, 2018. 10. 10. 당시 구체적으로 발생되어 있던 물품대금채권인 D주유소 잔액 40,254,775원, E 잔액 45,696,565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개별 잔액은 C의 입금액이 변제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5) 결국 2018. 10. 1.경부터 2019. 2. 19.까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2018. 10. 5.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18. 10. 10. 매매예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신성훈

별지 목록

(이 사건 부동산의 표시)

1. 경상남도 밀양시 주유소용지 1114㎡
2. 경상남도 밀양시 지상건물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유소(사무실) 1층 54.8㎡ 2층 53.4㎡

【이상】

